

이천 마장 휴먼빌 까사포레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안내

이천 마장 휴먼빌까사포레에 보내주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오며,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천 마장 휴먼빌까사포레 입주대상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입주대상자 자격확인 등)에 의거 계약체결일 이전에 청약하신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예비당첨자)분들께서는 아래 안내를 참고하시어 필요서류를 지참하신 후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www.applyhome.co.kr)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정당한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만 정당계약체결(2022.4.1(금)~2022.4.12(화))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재당첨정보 등에 관련된 부적격 내용은 별도 통보예정입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 '22.3.21(월) ~ '22.3.31(목) 11일간, 10:00~18:00시
- 장소 : 이천 마장 휴먼빌까사포레 모델하우스 (경기도 이천시 안흥동 167번지)
-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특별공급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본인	해당 특별공급 관련 서류 지참
	○		서약서, 당첨자 약약서	-	견본주택 비치, 무주택 인증서류(서약서로 대체)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견본주택 비치, 신청자 본인 접수 산정
	○		일반공급 배점표	-	견본주택 비치, 신청자 본인 접수 산정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본인 발급용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주소변동 사항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일반공급	○		출입국 사실 증명원	본인 부양가족 (세대원 구성원 전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5항에 의거 기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여, 출입국 기록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청약 당첨자 및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세대원의 경우 본인 생년월일 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증명(기록대조 시작일 : 생년월일 / 기록대조 종료일 : 공고일 현재)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초본 발급시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 발급 요망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단독세대주의 경우 /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과거 변동 내역이 포함된 "상세"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수도권의 지역에 거주하는 장기 복무군이 수도권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비속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전체포함"으로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과거 변동내역이 포함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직계비속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 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등)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아파트등본 포함)	해당주택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해당주택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해당주택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위임장	본인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본인	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본인	
	○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인정	대리인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2.24) 이후 발행분 및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원본 서류만 접수 가능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의 자격검증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의 추가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주민등록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주택공급신청시, 제출서류명칭(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일정기간 거주증명)이 필요합니다.
 ※ 상기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규 및 '국토교통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작성한 내용으로 '관련법규' 및 '국토교통부 지침' 등과 상기 내용이 상이한 경우 '관련법규' 및 '국토교통부 지침'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